

MINI 시장조사 보고서

미국 수출 절차

1. 글로벌 수입 추이

- “삶은 죽순(냉동, 유통기한 1개월)” 은 냉동식품으로 분류되고 HS코드는 0710.80.3000로 파악되었음

< HS코드 >

0710	Vegetables, Nesoi, Uncooked Or Cooked By Steaming Or Boiling In Water, Frozen 냉동채소(조리하지 아니한 것 또는 물에 삶거나 찌서 조리한 것에 한한다)
071080	기타채소
0710803000	죽순

- HS CODE 071080에 대한 글로벌 수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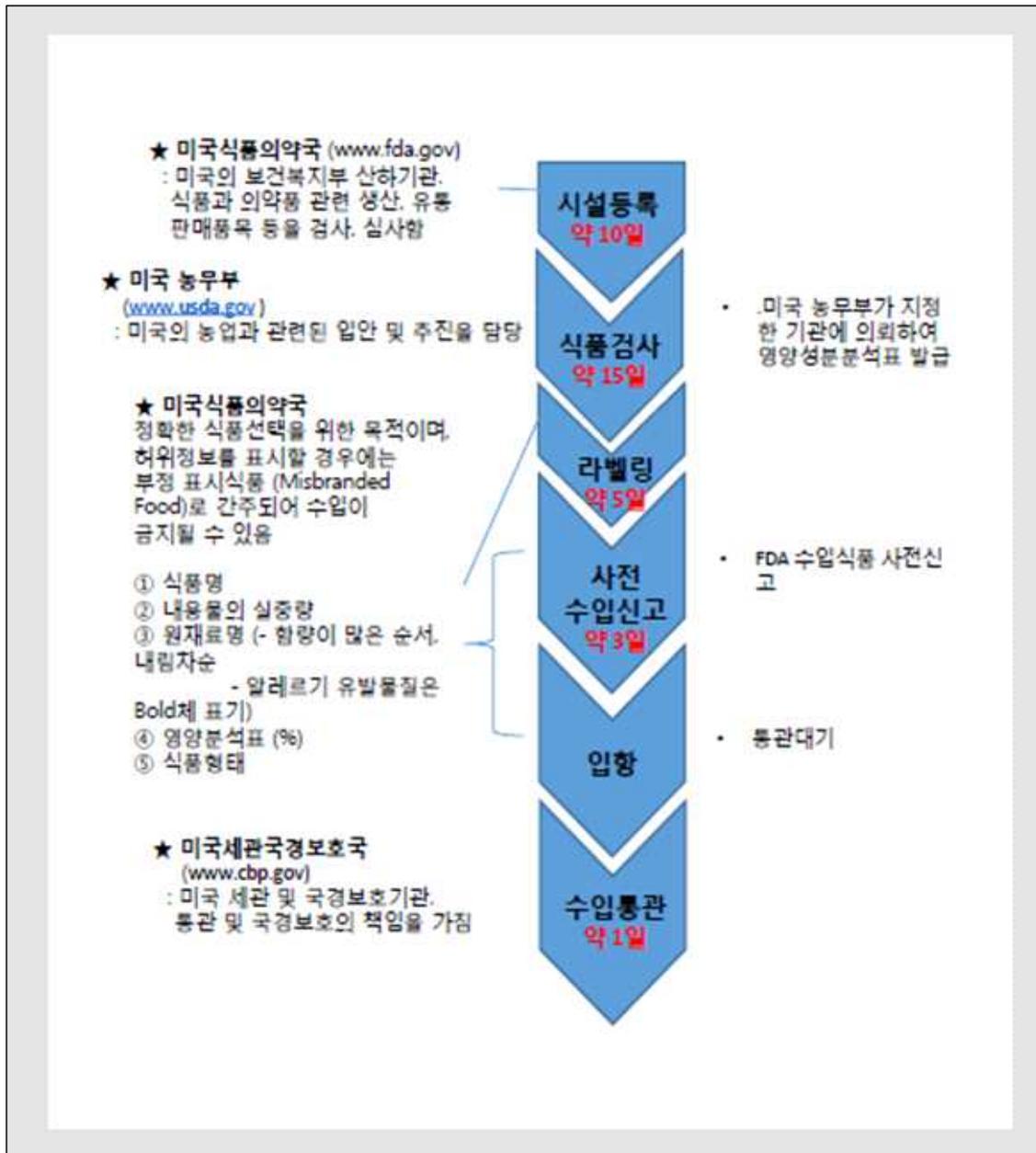
- HS CODE 071080에 대해 가장 많이 수입하는 지역은 유럽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어 미국, 독일 수입량이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음

Reporting Country	United States Dollars			% Change
	2011	2012	2013	2013/2012
Total	5120497386	4565620974	4674186944	2.38
EU15 (External Trade)	599865481	506439160	540476205	6.72
United States	525186601	530218234	504685714	-4.82
Germany	406731062	365927163	378655456	3.48
Japan	325265173	376743810	376829685	0.02
France	394705186	367163018	376007374	2.41
EU25 (External Trade)	449628704	350277038	364876981	4.17
EU27 (External Trade)	429081022	333639184	334182279	0.16
EU28 (External Trade)	429154012	333652058	334039968	0.12
Belgium	286586227	257071068	255771952	-0.51
United Kingdom	215778955	201229874	221800577	10.22

출처 GTA

2. 미국 수출 절차

< 미국 수입 절차도 >



1) 시설 등록(Registration of Food Facility)

- 2004년 8월 12일에 본격 시행된 미국의 바이오테러대응법(BTA)에 의해 미국에서 소비되는 식품, 사료를 수출하는 기업(제조/처리, 포장, 보관)의 경우 그 제조시설을 FDA에 등록해야 하며, 이를 'FDA 시설등록'이라고 함
- 제조시설에 대한 소재지, 책임자, 연락처, 미국내 비상연락망 등의 정보를 등록하게 되며, 이는 매년 식품 수출시 사전신고를 위한 필수 절차임

2) 식품 검사

- 미국 농무부가 지정한 기관에 의뢰하여 영양 성분 분석표 발급

3) 라벨링

- 기본표기사항
 - 식품의 명칭은 통상적인 명칭을 사용해 표기하며 포장용기의 주표시에 표기해야하고 활자의 크기는 라벨에서 사용된 가장 큰 활자의 절반 크기 이상이 되어야 함
 - 순중량의 표시는 주요면의 하단 30%위치에 표시하고 미국단위와 미터 단위로 함께 표시해야 함. 제조사, 포장자, 유통자의 명칭과 주소는 성분 표시면과 같은 면에 기재해야 하며 예외가 없는 한 완전한 주소를 표시해야함
 - 성분표시는 라벨의 주요 표시면, 측면 혹은 후면의 정보표시면에 표기할 수 있으나 제조사, 포장자 혹은 유통자와 같은 면에 표시해야 함. 성분의 목록순서는 중량이 무거운 것에서 가벼운 것의 순으로 하고 통상명칭으로 기재해야 함. 또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주요성분도 반드시 표시해야만 함

- 특히 **영양성분 표시(Nutrition Fact)**는 검사를 통해 1인분을 기준으로 영양소가 정확히 언급되어야 하며 일일 섭취량 표시가 필수적임.
- 식품의 명칭
 - 식품의 명칭은 “statement of identity”로 표시돼야 함. 표시 원칙은 영문으로 하여야 하며, 외국어의 병기도 가능. 사용명칭은 쉽게 인식될 수 있어야 하고, 식품형상의 표현은 인식하기가 용이해야 함. 식품명은 반드시 主표시면에 표기해야 하며, 표시면의 인쇄 중 가장 큰 것의 1/2 이상의 크기여야 함
 - 식품이 일반적·통상적인 명칭을 갖는 경우 이를 식품명으로 사용하며, 일반적·통상적 명칭이 없을 경우에는 그 식품을 적절하게 설명하는 명칭을 사용하여 제품을 잘못 알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식품의 명칭은 포장의 바닥과 평행하게 써져야 함
 - 포장된 식품이 액체가 아닌 경우 ‘가늘게 썰어진 것인지(sliced)’ ‘썰지 않은 것인지(unslice)’ ‘반으로 잘라진 것인지(halves)’ 등의 식품형태를 명시
 - 어떤 신제품이 기존에 있던 식품과 유사하며, 기존 식품의 대체제로 사용될 때 만약 그 신제품이 기존의 것보다 필수 비타민·무기질·단백질 함량이 낮다면, 신제품에는 ‘모방(imitation)’이라는 표시를 해야 하며, 식품명과 같은 글자 크기와 선명도로 표기해야 함
 - 과일이나 채소의 그림, 맛이나 외관, 라벨표기 등으로 소비자가 주스를 함유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음료는 주스의 함량을 %로 표시해야 함. 그러나 향미를 위해 소량의 주스가 함유된 음료에는 주스 함량을 표시하지 않아도 됨. 100% 주스로 만들어진 음료는 ‘주스’라고 표시할 수 있으나 100% 미만으로 희석된 음료는 음료, 드링크, 칵테일의 의미를 갖도록 표시해야 함. 혼합과일이나 채소주스의 명칭을 표시할 때는 향미목적으로 사용되어 표시가 면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주스부터 부피에 따라 내림차순으로 표시해야 함

- 정미중량의 표시

- 식품의 중량은 용기 또는 포장 등의 중량을 제외한 정미중량, 즉 실중량을 기재해야 함. 용기안의 식품에 부가된 물이나 다른 액체는 실중량 표시에 포함. 충전매개체가 포함된 경우 충전매개체를 제거한 무게가 실중량. 내용물의 중량은 미터법(grams, kilograms, milliliters, liters)과 미국 통상단위법(ounce, pounds, fluid ounces)에 따라 두 가지로 표기해야 함

- 원재료명의 표기

- 원재료의 표기는 식품에 사용한 스파이스, 향료, 착색료 및 첨가물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표시하는 원재료명은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명칭으로 표시하고,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집합적 명칭을 표시해서는 안됨
- 원재료명 목록(Ingredient list)이란 식품에 사용된 각각의 원재료를 주된 것부터 내림차순(중량이 많은 것부터 적은 순서로 쓰는 방식)으로 나열하는 것을 말함. 원재료명 목록은 식품명, 제조자, 포장업자, 유통업자의 주소 등이 있는 면과 같은 면에 있어야 하고, 영양표시, 제조자, 포장업자, 유통업자 주소의 앞이나 뒤에 표시할 수 없음
- 허가된 방부제를 식품에 첨가할 경우 원재료명에 그 방부제의 일반적 또는 통상적 명칭을 기재해야 함. 파프리카, 튜메린, 샤프론 등 색소로도 사용되는 향신료는 ‘파프리카’와 같이 실제 명칭을 기재하거나, ‘향신료와 색소’라는 용어로 표시함
- 인공색소는 공인된 색소의 경우 약어 또는 특정의 명칭을 사용하고, 공인되지 않은 색소의 경우 ‘인공색소(artificial color)’라고 표시하거나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명칭을 사용

- 제조업자 · 포장업자 · 유통업자의 표시

- 식품제조업자·유통업자의 명칭, 사업장의 위치를 명확히 하여 정보 표시면에 표시해야 함. 이 경우 수입식품은 미국 세관의 원산지 기재에 관한 사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기해야 함

- 일자 표기

- 미국 연방규제에는 유효기간 등의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음. 다만, 유아용식품에는 ‘Expiration date’의 표시를 해야 함

- 영양정보 표시

- 미국의 식품표시제도는 해당식품의 영양에 관한 표시(New Nutrition Label)를 의무적으로 표기토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포장당 1회분량, 1회 분량당 영양소 함유량 등을 표시해야 함. 그러나 식사보조용 식품, 의료용 식품, 소매되기 전 가공이나 포장을 위해 큰 포장 단위로 운송되는 식품, 주문 가공생선, 상자단위의 계란, 판매용이 아닌 소비자를 위해 증정용으로 만든 식품 등은 영양표시 면제대상으로 영양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됨
- 표시방법과 관련, 영양정보는 주표시면이나 정보표시 면에도 표시할 수 있고, 주 표시면과 정보 표시면에 충분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대체면에 표시할 수 있음. 아침식사용 씨리얼이나 날개로 먹을 수 있는 아이스크림과 같이 한 포장 안에 여러 개의 소포장이 되어있는 제품의 경우에, 제조자는 각각의 소포장에 일일이 영양정보 표시를 하거나 한 개의 포장에 통합적으로 표시할 수 있음
- 전이지방과 알레르기유발 식품에 대해서는 성분표시가 2006년부터 강화. 이로 인해 식품공급자는 영양정보 표시란에 전이지방 함량을 표시하고, 별도로 콜레스테롤 함량을 표시해야 함. 전체 지방함량에서 포화지방을 표시하고, 별도로 콜레스테롤 함량을 표시해야 함. 그러나 식품에서 전체 지방함량이 0.5g 이하인 경우 전이지방 함량을 표시할 필요가 없음
- 알레르기 유발식품에서 추출된 알레르기 항원 단백질을 함유한 식품

원료로 제조된 식품일 경우 식품라벨의 성분 표시란에 알레르기 유발식품의 존재 표시를 의무화 하고 있음. 표시는 식품명을 적은 후 괄호안에 알레르기 유발성분의 일반명을 기재하거나, 성분리스트를 적은 후 “contain”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알레르기 성분을 표기해야 함

- 신선농산물도 미국의 식품표시제도의 일반적인 원칙이 적용됨. 그러나 2개 이상의 성분으로 구성된 일반 식품의 경우 원재료명을 표기해야 하나 신선농산물은 그 자체가 하나의 성분을 이루기 때문에 원재료명을 표시하지 않아도 됨
- 영양분석표 또한 포장표기를 할 필요가 없으나 주요 식품의 경우 구매시점에서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진열대별로 표시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 신선농산물은 또 미국산이나 수입산에 관계없이 농산물마케팅국(AMS)이 지정한 20여개 품목은 AMS의 등급규정에 따라 등급을 표기해야 함. 등급표기는 식품표시제도를 주관하는 FDA가 아닌 농산물마케팅국(AMS)에서 관장함. 지정품목 외에는 자발적으로 표시하면 됨
-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라벨링규정은 '97년 제정된 DSHEA(Dietary Supplement Health and Education Act)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미국에서 유통되는 인삼제품들은 대부분 이러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음
- 건강보조식품은 “ginseng“처럼 성분표기를 해야 하고, 순중량을 표시해야 함. 복용법과 함께 일반식품의 영양분석표와 같이 일회분 용량, 활성성분 함량 등을 기재해야 함. 성분명세의 경우 일반 명칭으로 함량이 많은 것에서 작은 것의 순으로 기재하고, 제조업자나 포장업자 또는 유통업자의 명칭과 주소를 표기해야 함. 식품표시 라벨에 “Dietary supplement” 라는 표시를 인쇄해서 표시해야 함

□ 유자차 라벨링 표기의 예



출처 : 농수산물식품수출지원정보(kati)

□ 통관 또는 현지 유통시 문제

- 라벨링 표기를 하지 않은 경우
 - 현재 미국에 반입되는 한국 식품 가운데 15%정도가 라벨링을 하지 않거나 부정표시를해서 수입이 거부되는 사례가 있음.
 - 한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이더라도 현지에 반입될 때 스티커 작업을 하면 통관시 전혀 문제가 없음. 아래는 웅진음료에서 생산한 토마토 음료로 스티커를 장착한 뒤 수출한 예임.

□ 라벨링 스티커의 예



4) 사전수입신고(Prior Notice)

-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거나 발송하는 기업 및 개인은 반드시 FDA에 사전신고를 해야 함. FDA 웹사이트에서 직접 또는 대행해야함.
- 수출업체는 반드시 이 서류가 모두 첨부되어 있는지, 서류는 수입국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되어있는 지, 정확한 정보가 담겨있는 지 확인해야함. 이때, 반드시 유럽 연합의 CVED양식을 사용해야함

- 물리적 검사는 무작위로 실시(포장상태, 컨테이너온도, 실험실 테스트 등)

5) 입항, 수입, 통관

- 수입, 통관, 검역 절차 및 요건

- 수입 통관 절차 개요

- 개괄적으로 볼 때, 통관물품 도착시 통관항에서 화물인수인이 세관장에게 “통관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세관에 의해 그 물품의 인도가 허가되고, 관세를 납부한 뒤에 법적으로 통관이 인정됨
- 추가요금을 지불하면 화물인수인, 통관대행업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미국 내 제3의 항구로 보세 운송할 수 있음
- 제반 통관준비 및 상품하역은 수입업자의 책임

- 수입통관 절차의 특징

- 수입신고는 Entry(반출신고)와 Entry Summary(납세신고)로 구분됨
- Entry는 수입물품의 반출을 위한 것으로, 세관양식 CBPF3461 (Entry/ Immediate Delivery)을 사용
- Entry Summary는 세관이 세액결정, 통계자료수집, 타 법령과의 합치여부를 판정하는데 필요한 자료로서 세관양식 CF7501 (Consumption Entry), CF7502 (Warehouse Entry) 등을 사용
- 수입신고서류 제출방법: (분리제출이 일반적임)
 - 분리 제출시 : Entry 제출로 물품을 반출한 뒤 근무일기준 10일 이내에 관세와 함께 Entry Summary를 제출

- 결합 제출시 : 주로 쿼터품목에 적용되는 방식으로서 Entry와 Entry Summary를 제출한뒤 이를 검토받아 관세를 납부하고 필요한 경우 물품검사를 거쳐 반출되는 방식임

○ 통관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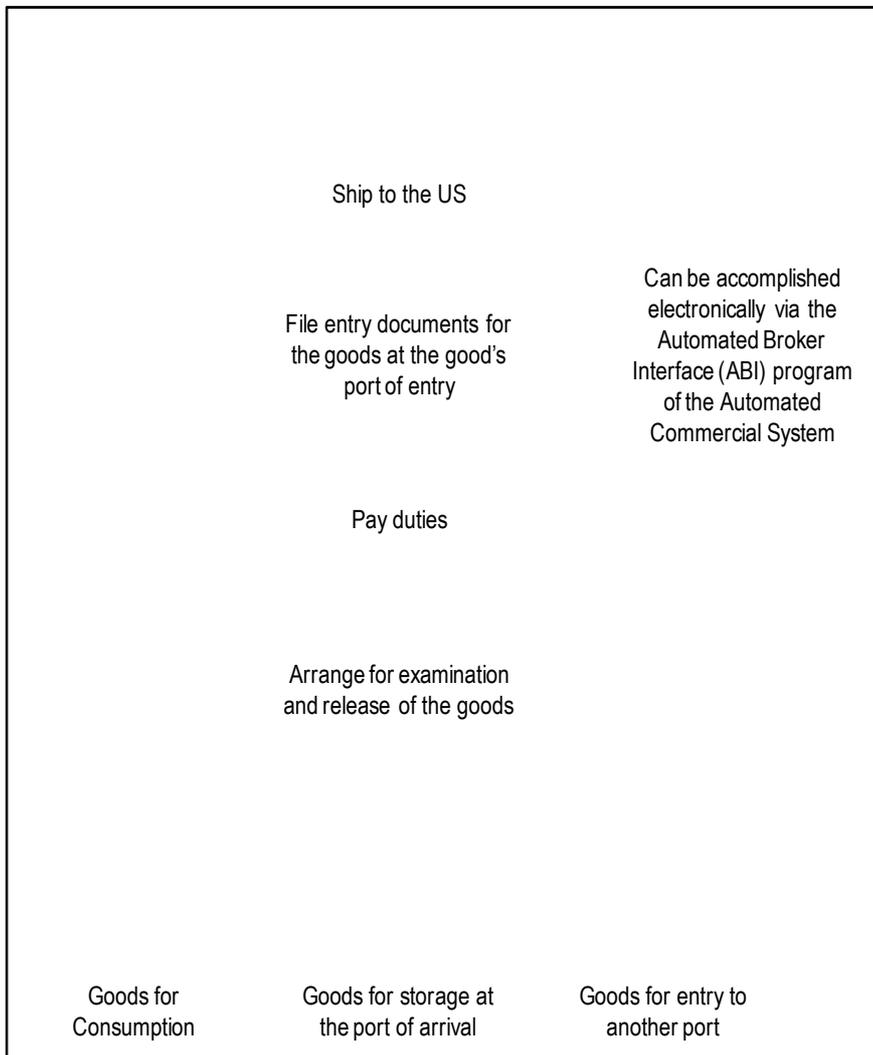
- Manifest를 제출 → Entry를 제출 → 물품을 반출 → 계산한 관세와 함께 Entry Summary를 제출하여 심사 → 관세를 정산하는 순서로 이루어짐
- 적하목록(Manifest) 제출
- 운송회사는 세관 입항신고시 Manifest를 함께 제출
- 세관은 manifest 기재내용과 일치하게 물품이 장치, 보세운송되는지를 확인하고 수입자가 제출한 Entry기재내용의 상호일치 여부를 확인
- 물품 도착후 수입자는 근무일기준 15일 이내 수입신고 (Entry 제출)
 - 1회 연장가능(10근무일): 시한경과시, 세관 지정창고에 입고
- 물품조사 및 반출:
 - Entry 기재내용에 의거, 그 상품의 위법성 가능여부를 high risk 혹은 low risk 물품으로 선별(high risk 물품은 집중 현물조사)
 - low risk 물품은 일반검사 (서면 검사에 그침)
 - 검사후 세관직원이 Entry에 서명함으로써 반출 허가
- Entry Summary의 제출 및 심사
 - 수입자는 반출 후 10 영업일 이내에 概算한 관세와 함께 Entry Summary를 세관에 제출(상품 세 번 분류, 과세가격, 관세산정은 일단 모두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

- 세관은 Entry Summary를 심사하여 세액확정, 통계작성, 기타 쿼터 등의 제반 규제법령등과 일치 여부를 심사

- 정산제도

- 수입업자가 개산하여 납부한 관세액(Estimated Duty)과 심사결과 납부해야할 세액(Liquidated Duty)을 비교, 과잉납부액을 환급하고 부족액을 추가로 징수하는 절차로서 Entry 제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

○ 수입 통관 프로세스



○ 미 관세법 기본 원칙

- 1994년 1월부터 발효된 세관근대화법으로 인해 관세행정의 전산화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자율적이고 성실한 신고에 의한 신속한 통관 등 많은 혜택을 보게 되었음
- 관세청의 유권해석 결정제도에 의하여 수입품목에 사전 품목분류, 과세 가격, 원산지결정, 원산지표시, 특혜관세 해당여부 등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문의함으로써 가능하면 유리한 관세율의 적용과 관세부담을 줄일 수 있음
- 미국은 WCO(세계관세협력기구)가 채택한 국제상품분류제도 (HS Code)에 의거, 미국의 실정에 맞게 세분한 HTSUS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S)를 운용. 8단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총 9,121개에 달하는 세부 품목별로 관세율을 정해 둔 방대한 관세율표를 운용하고 있으며 아울러 상품분류가 반드시 일반통념과 일치하는 것도 아니므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가장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함
- 미국은 개도국에 대해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GSP)를 운영하여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OECD에 가입할 정도로 성장한 한국은 해당이 없음. 다만, 제3국에 투자 진출하여, 미국의 원산지규정에 의해 해당 국가의 제품으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GSP가 유용한 수단이 될 것임
- 카리브해연안국가의 물품 및 미 도서속령(괌, 버진아일랜드 등) 제품에 대해서는 특혜관세를 제공함
- 보세가공면세수입제도 (HTSUS 9802.00.60 및 9802.00.80)
 - 9802.00.60은 미국에서 제조한 금속제품이 해외로 수출되었다가, 추가적 가공을 위해 재수입되는 경우, 해외에서의 부가된 가치에 대해서만 과세하도록 규정

기타 관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등도 아울러 제공

○ 관세 : 관세는 일반 관세, 특별 관세 및 법정 관세 등 3 가지로 구성되어 있음

- 일반 세율 : 최혜국위한 관세

- 특별 세율 : 우대 조치가 적용되는 국가에 적용됨. 자세한 내용은 “특혜 등 특별 조치”항목 참조.

- 법정 세율 : 쿠바와 북한 2 개국에 적용되는 관세. 예전에는 공산권 국가를위한 관세였지만, 대상이 점차 줄어 2001년말 아프가니스탄과 베트남이 제외되어, 현재는 상기 2 개국만 대상임

○ 관세의 종류

- 관세는 품목에 따라 從價稅, 從量稅 또는 양자가 같이 부과

○ 과세 기준 : 수입 FOB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함

- 수입화물의 수입 물량(무게, 부피 또는 수량)과 수입 가격(FOB 기준)을 기준으로 관세율표에 따라 자진 신고로 납부함. 품목에 따라 從量 과세, 從價 과세 또는 병용 과세가 적용됨

- FOB 가격이 미국 달러 이외의 (외국)통화일 경우, 선하증권 기재되는 수출 시점의 공정 환율(분기별로 발표되는)를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또한, 상무부가 결정한 특수 관세로 반덤핑 관세와 상계 관세가 부과될 수 있음(관세율표는 HS 분류에 따라 구성되고, 매년 1월 1일 부로 개정됨)

- 수입시 수입자가 납부하는 관세는 예상 납부(Estimate Duty)이며, 1년 이내 (보통 4개월 이내)에 세관이 결정한 확정 관세와 차이가 있다면, 이 차액을 징수하거나 환급함. 이것을 관세 청산(Liquidation)이라고 함

○ 우대 조치 : 특혜관세

- 미국이 타국을 우대하는 특혜관세 제도는 다음과 같음

- 일반 특혜 관세 제도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 GSP)
- 자동차 제품 무역법 (Automotive Products Trade Act)
- 민간 항공기 무역 협정 (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
- 북미 자유 무역 협정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 NAFTA)
- 아프리카 성장 기회 법 (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
- 카리브해 경제 회복 촉진법 (Caribbean Basin Economic Recovery Act)
- 미국 이스라엘 자유 무역 협정 (United States - Israel Free Trade Area)
- 안데스 특혜 무역 법 (Andean Trade Preference Act)
- 미국 요르단 자유 무역 협정 (United States - Jordan Free Trade Area Implementation Act)
- 제품 무역 협정 (Agreement on Trade in Pharmaceutical Products)
- 염료에 대한 중간 화학 물질에 관한 우루과이 라운드 양허 (Uruguay Round Concessions on Intermediate Chemicals for Dyes)
- 미국 카리브해 무역법(United States - Caribbean Basin Trade Partnership Act)

○ 관세 이외의 세금

- 특정 상품에 부과되는 국내 소비세 및 항만 유지 수수료 등을, 세관이 관련 부처를 대신하여 징수하며, 또한 세관 사용료 등을 부과함. 관세 이외에 세관이 다른 기관을 대신하여 징수하는 세금과 수수료는 다음과 같음

- 국내 소비세 : 다음의 수입화물에 대한 국내 소비세는 세관이 국세청 (IRS)을 대신하여 수입시 징수

- 맥주
- 와인 (술 포함)
- 발효주
- 에탄올
- 주류
- 향기 물질을 함유하는 음료
- 담배 제품

■ 상업화물 세관 사용료 (Custom User Fees) : 아래 면제화물을 제외한 모든 화물(관세 면세 제품 포함)에 대하여 세관의 요금을 징수됨

- 현행 수수료율 (1995년 개정) : 수입 신고 금액(FOB 가격)의 0.21%(최저 25 달러 ~ 최고 485 달러). 그러나 NAFTA의 발효로 캐나다 및 멕시코 제품은 없음. 매뉴얼(비 전산화) 신고의 경우 6 달러가 추가됨

· 수수료 면제화물

- * 미국 관세율표 제 98 류 감면세 품목 (일부 예외 있음)
- * 미국 속령 (괌, 미국령 사모아, 버진 아일랜드, 푸에르토리코) 산품
- * 후발 개발 도상국 산품
- * 카리브해 경제 회복 (CBI) 대상 국가 산품
- * 이스라엘과 자유 무역 협정 대상 제품,

■ 항만 유지 수수료

- 수자원 개발법(1986년 Public Law 99 - 662)에 규정된 바와 같이, 미국의 항만을 이용하는 자(화주)에게 화물(수출입 및 일부 국내화물)의 0.125%(1990년까지는 0.04%)에 해당하는 從價稅을 부과하는 것으로, 1987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수출·수입·국내화물 등에 관계없이 징수됨

○ 원산지 표시제도

- 원산지 표시 관련 법령

- 미 관세법 제 1304조(수입물품 및 용기의 표기)
- 동법 시행령 제 134.0 - 134.55(원산지 표기)

- 원산지 표시 의무화 대상 품목

- 표시 의무화 대상 물품 : 모든 외국산 물품
(미국산 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기는 의무사항이 아님)
- 표시 의무 예외 물품
 - 원산지 표기가 불가능한 물품
 - 선적 전에 물품을 손상하지 않고, 표기가 불가능한 품목
 - 표기 비용이 지나치게 많아 수입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 용기에 표기된 내용이 충분히 원산지를 나타내는 경우
 - 가공되지 않은 원료
 - 수입물품이 판매용이 아닌 경우
 - 원산지를 은닉할 목적이 아니며, 수입자에 의해 가공되거나 사용할 예정인 물품
 - 물품의 성질상 최종 사용자가 원산지를 알 수 있는 경우
 - 수입 시점으로부터 20년 전에 생산된 물품
- 원산지 표시 예외 품목(J-List 예외 품목)
 - 예술 작품, 구슬, 단추, 계란, 꽃, 유리, 종이, 가축, 목재, 나사 등
 - 다만, 상기 목록의 물품이 포장용기에 담겨져 수입될 경우, 포장 용기에 원산지국 표시 의무화
- NAFTA 국가 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면제
 - 예술 작품
 - 관세율표상 6904.10(건축용 벽돌), 8541(반도체 디바이스), 8542(전자집적회로) 물품

○ 원산지 표시 언어 및 허위 표시 제재

- 원산지 국명 영어(Full English Name) 표기(관세법 1304조)

- 원산지 국명에 대해 착오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국명 외에 추가 기재 요구 가능
- NAFTA 원산지 물품의 경우 영어, 불어, 스페인어로 표기 가능

- 원산지 표시 위반시 처리

- 원산지 표시가 관세법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수출하거나 폐기
- 원산지를 적정하게 수정·기재하여 수입하는 경우, 물품 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관세를 추가 징수

- 원산지 표시 위반 시 제재

- 원산지 정보를 은닉, 폐기, 제거, 변경하는 경우, 최초 위반에 대해 10만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또는 벌금/징역 병과)에 처함
- 2회 이상 위반 시 25만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또는 벌금/징역 병과)에 처함

○ 미국의 원산지국명 표기

- 원산지 국명 표기 인정 범위 및 관련 법

- 국명이란 정치적 실체로서의 국가를 의미하며, 본토 외부에 위치한 식민지, 속령, 보호령 등은 별개의 국가로 취급
- 자치권이 인정되어온 홍콩, 마카오 등에 대해서는 중국 반환 이후에도 계속 독립적인 원산지 표기 인정

- Made in EU' 원산지 표시 인정 여부

- EU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인 경우에도 EU가 아닌 개별 국가명을 표기하며, 현재 미국에 수입되는 유럽 국가의 제품에는 개별 국가명이 표기되어 수입되고 있음
- 또한 원산지 표기 이외에도 미 관세법 상 반덤핑/보복관세 부과 등 세관업무에 EU 국가의 경우에도 ISO 국가코드가 사용되고 있음
- NAFTA(캐나다, 멕시코) 국가 제품인 경우에도 개별 국가명을 표기

○ J-List 예외 품목

- Art, works of.
- Articles classified under subheadings T.D. 66-153.
- 9810.00.15, 9810.00.25, 9810.00.40 and 9810.00.45,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 Articles entered in good faith as antiques and rejected as unauthentic.
- Bagging, waste.
- Bags, jute.
- Bands, steel.
- Beads, unstrung.
- Bearings, ball, $\frac{5}{8}$ -inch or less in diameter.
- Blanks, metal, to be plated.
- Bodies, harvest hat.
- Bolts, nuts, and washers.
- Briarwood in blocks.
- Briquettes, coal or coke.
- Buckles, 1 inch or less in greatest dimension.
- Burlap.
- Buttons.
- Cards, playing.
- Cellophane and celluloid in sheets, bands, or strips.

- Chemicals, drugs, medicinal, and similar substances, when imported in capsules, pills, tablets, lozenges, or troches.
- Cigars and cigarettes.
- Covers, straw bottle.
- Dies, diamond wire, unmounted.
- Dowels, wooden.
- Effects, theatrical.
- Eggs.
- Feathers.
- Firewood.
- Flooring, not further manufactured than T.D.s 49750; 50366(6).
- Flowers, artificial, except bunches.
- Flowers, cut.
- Glass, cut to shape and size for use in clocks, hand, pocket, and purse mirrors, and other glass of similar shapes and sizes, not including lenses or watch crystals.
- Glides, furniture, except glides with prongs.
- Hairnets.
- Hides, raw.
- Hooks, fish (except snelled fish hooks)... T.D. 50205(3).
- Hoops (wood), barrel.
- Laths.
- Leather, except finished.
- Livestock.
- Lumber, sawed... T.D.s 49750; 50366(6).
- Metal bars, except concrete reinforcement bars; billets, blocks, blooms; ingots; pigs; plates; sheets, except galvanized sheets; shafting; slabs; and metal in similar forms.
- Mica not further manufactured than cut or stamped to dimensions, shape or form.
- Monuments.
- Nails, spikes, and staples.
- Natural products, such as vegetables, fruits, nuts, berries, and live or

dead animals, fish and birds; all the foregoing which are in their natural state or not advanced in any manner further than is necessary for their safe transportation.

- Nets, bottle, wire.
- Paper, newsprint.
- Paper, stencil.
- Paper, stock.
- Parchment and vellum.
- Parts for machines imported from same country as parts.
- Pickets (wood).
- Pins, tuning.
- Plants, shrubs and other nursery stock.
- Plugs, tie.
- Poles, bamboo.
- Posts (wood), fence.
- Pulpwood.
- Rags (including wiping rags) Rails, joint bars, and tie plates covered by subheadings 7302.10.10 through 7302.90.00,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 Ribbon.
- Rivets.
- Rope, including wire rope; cordage; cords; twines, threads, and yarns.
- Scrap and waste.
- Screws.
- Shims, track.
- Shingles (wood), bundles of (except T.D. 49750. bundles of red-cedar shingles).
- Skins, fur, dressed or dyed.
- Skins, raw fur.
- Sponges.
- Springs, watch.
- Stamps, postage and revenue, and other T.D. 66-153.
- articles covered in subheadings 9704.00.00 and 4807.00.00,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 Staves (wood), barrel.
- Steel, hoop.
- Sugar, maple.
- Ties (wood), railroad.
- Tides, not over 1 inch in greatest dimension.
- Timbers, sawed.
- Tips, penholder.
- Trees, Christmas.
- Weights, analytical and precision in sets T.D.s 49750; 51802.
- Wicking, candle.
- Wire, except barbed.

○ 검역 규정

- 미국의 과일 및 채소류 수입규정(Q-56): 요약
(7 CFR Code Part 319 외국산 농산물에 대한 검역, Subpart 과일 · 채소류)
- 319.56-1 : Notice of Quarantine
 - 농업부 장관은 미국 영토 내로 유해한 식물 병해충 및 잡초의 유입, 전파를 막기 위하여 식물 및 식물성 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
- 319.56-2 : 용어정의 : (생략)
- 319.56-3 : 과일 및 채소류 수입에 관한 일반 요건
 - 식물성 잔재물이 없어야 함
 - APHIS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함(상업용, 비상업용 불문)
 - 예외: 건조, 가공(단, 냉동품, 일부 밤이나 도토리류는 수입허가 필요)
 - 지정된 반입항을 통해 수입되어야 함

- 도착 후 검사를 받아야 함
- APHIS는 일과시간 중 정규 근무에 대해서만 비용을 부담
- APHIS는 동 규정의 적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과실, 채소의 손상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음

- 319.56-4 : 과실 및 채소류에 대한 수입 허용

- APHIS 청장은 지정된 관리방안으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과실 및 채소류의 수입을 허용(이러한 품목의 종류 및 수입요건은 아래의 웹사이트에 게시)
(www.aphis.usda.gov/import_export/plants/manuals/ports/downloads/fv.pdf)

- 지정된 관리 방안

- 도착지 검사
- 병해충비발생지역에서 생산되어 PC에 원산지 기재
- 정해진 기준에 따라 소독처리
- 현지검역
- 상업용 화물로만 수입

- 지정된 관리방안으로 기 허용되어 있던 품목은 달리 언급되지 않는 한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수입 가능

- 이미 허용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PRA를 실시. 지정된 관리방안으로 위험관리가 가능할 경우 그 결과를 연방관보에 게재, 결과에 반하는 의견이 접수되지 않으면 수입허가서를 발행

- 고시일 이후 지정된 관리방안으로 충분치 않음이 확인된 경우,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수입요건을 개정할 수 있음

- 319.56-5 병해충 비 발생지역

- 검역 병해충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지역으로부터, 또는 일부 검역병해충이 존재하지 않는 지역으로서 나머지 검역 병해충에 대해서는 다른 위험관리방안을 적용하여 과실 및 채소류를 수입할 수 있음
- 병해충 비발생지역 인정 시 IPPC 관련 국제기준을 적용
- APHIS는 병해충 비발생 상태를 판정, 유지하기 위한 프로토콜 및 검출 시 조치에 관하여 승인하여야 하며, 현지 조사를 실시함
- 병해충비발생지역으로 인정될 경우 연방관보에 60일간 공고하여 의견 수렴
- 병해충이 검출되었을 경우, 동 사실을 연방관보에 게재하고 비발생지위를 취소함. 비발생지역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a)와(b)의 절차를 거쳐야 함
- 병해충비발생지역에서 수입되는 과실, 채소류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과수원 또는 생산자의 이름, 생산된 지역명, 과실의 종류 및 수량을 박스에 표시해야 함
 - PC에 병해충비발생지역에서 생산되었음을 부기
 - 운송 과정에서 재감염 방지조치

- 319.56-6 신탁기금 협정

- APHIS 검역관이 수출국에서 검사를 수행할 경우, 수출국의 NPPO는 비용부담에 관하여 수출당사자와 협정을 체결해야 함. 여기에는 모든 행정적 비용과 급여(초과근무수당, 연금 포함), 여행경비(일비 포함) 및 기타 소요비용이 포함되어야 함

- 319.56-7 영토의 적용 및 예외

■ 이 규정은 미국 전역에 적용되며 다음의 경우는 예외임

■ 꺾임으로 수입되는 과실, 채소(한국산의 경우)

· Allium(지상부 제거), artichoke, 바나나, bell pepper, 양배추, 당근, 셀러리, 배추, 감귤류, 가지, 포도, 상추, 멜론, 오크라, 파슬리, 콩, 감, 감자, rhubarb(대황), 단호박, 핵과류, string bean(깍지콩), 고구마, 토마토, turnip greens(순무잎), 순무, 수박

· 풋옥수수

· 기타 미국 영토로 수입이 허용되어 있는 것
(단, 코코넛 잎으로 만든 바구니, 상자는 포장용으로 사용 할 수 없음)

- 319.56-8, 9 : (Reserved)

- 319-56-10 캐나다산 과실 및 채소류 수입: (생략)

- 319.56-11 건조 또는 가공된 과실, 채소, 견과 및 콩류의 수입

-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허가서나 PC가 필요하지 않음

■ 밤 및 도토리

· 캐나다와 멕시코산을 제외한 비재식용은 수입허가서와 소독처리 필요
· 재식용의 경우 319.37규정에 따라야 함

· 미탈각 마카다미아: St, Eustatiustks을 제외하고는 수입금지

- 319.56-12 냉동 과실 및 채소류의 수입

■ 운송 도중 및 도착 시 화씨 20도 이하로 유지되어야 함. 급속냉동이 허용되지 않는 품목의 목록은 305.17 참조(예; 한국산 껍질을 벗기지 않은 감귤)

- 319.56-13 특정 조건에 따라 수입가능한 과실 및 채소(한국산의 경우)
 - dasheen(타로): 포장상자에 ‘팜으로는 반입 및 유통 금지’ 표시
 - 배 : 현지검역
 - 딸기: 9. 15~5. 31일 사이에만 가능
- 319.56-14 ~19 (Reserved)
- 319.56-20 호주 및 뉴질랜드산 사과, 배
- 319.56-21 일부 국가산 오크라
- 319.56-22 유럽 일부 국가산 사과, 배
- 319.56-23 칠레산 살구, 넥타린, 복숭아, plumcot, 자두
- 319.56-24 이스라엘산 상추, 고추
- 319.56-25 중앙아메리카 및 브라질산 파파야
- 319.56-26 남미 일부국가산 멜론 및 수박
- 319.56-27 일본 및 한국산 후지사과
- 319.56-28 일부 국가산 토마토
- 319.56-29 중국산 배(Ya pear)
- 319.56-30 멕시코 미추아칸주산 아보카도
- 319.56-31 스페인산 고추
- 319.56-32 뉴질랜드산 고추
- 319.56-33 필리핀산 망고
- 319.56-34 스페인산 클레멘타인
- 319.56-35 한국산 감
- 319.56-36 한국산 수박, 단호박, 오이, 참외
- 319.56-37 한국산 포도
- 319.56-38 칠레산 클레멘타인, 만다린, 탠저린
- 319.56-39 중국산 향배
- 319.56-40 중앙아메리카 일부국가산 고추
- 319.56-41 페루산 감귤류
- 319.56-42 한국산 고추(파프리카)

- 319.56-43 잠비아산 옥수수 및 당근
- 319.56-44 멕시코산 가공용 자몽, 스위트오렌지 및 탠저린
- 319.56-45 케냐산 완두콩
- 319.56-46 인도산 망고

○ 수출입 관련 주의사항

- 관할 관청:

- 무역일반

- 상무부(DOC) : <http://www.commerce.gov/index.html>
 - 무역 대표부(USTR) : <http://www.ustr.gov>

〈참고〉 : 재무부 산하에 있던 옛 미국 세관 (US Bureau of Customs) 는 2003 년 1월 창설된 국토안보부(Dept. of Homeland Security = DHS) 산하로 옮겨, 명칭도 세관·국경 보호국(US Bureau of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로 변경되었음

- 수출입 관계

- 상무부 국제 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 <http://www.ita.doc.gov>
 - 상무부 산업안보국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 <http://www.bis.doc.gov>
 - 국토 안보부 관세·국경 보호국(US Bureau of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 <http://www.cbp.gov>

- 제재에 대한 수출입 관리 감독

- 재무부 외국자산 관리국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 워싱턴 조약에 관한 관리 감독(CITES)

- 내무부 야생 동물 관리국 (US Fish and Wildlife Service)
http://www.doi.gov

○ 수입 품목 규제

- 수입 금지 · 제한이 생길 수 있는 품목

- CBP는 별도로 금지 품목 열거하고 있지 않지만, 어떤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요구를 할 수 있는 품목은 다음과 같음

분야	해당 품목
농산물	1. 치즈 우유 유제품, 2. 과일 야채류, 3. 곤충, 4. 가축, 5. 고기 닭고기 계란 제품, 6. 식물 식물생성물, 7. 씨앗, 8. 포장재, 9. 담배류
무 기	10. 무기 총탄과 폭발물 등의 전략 물자, 11. 방사성 물질 원자로
에너지 기준	12. 가전 제품, 13. 상업 및 산업 설비
소비자제품 안전위원회 (CPSC)	14. 완구, 15. 도장용 납, 16. 자전거 헬멧, 17. 불꽃놀이, 18. 가연성 직물, 19. 미술 용품, 20. 시가 라이터, 21. 다 목적 라이터, 22. 다른 규칙 및 표준
전자 제품	23. 방사선과 초음파 방사선 제품, 24. 무선기기
바이오 테러 법	25. 식품 화장품 등 26. 생물학적 제제, 27. 생물학적 물질 및 생물학적 벡터, 28. 마취와 관련된 약, 29. 마취기구
분쟁지	30. 분쟁 지역에서 채굴된 다이아몬드
금 · 은 등의 화폐 대체	31. 금 · 은, 32. 화폐 모조품, 33. 화폐대체물
유해 물질	34. 농약, 35. 유독물질, 36. 유해성 물질, 37. 해열제

섬유 제품	38. 식물 제품, 39. 양모, 40. 모피
지적 재산권	41. 등록상표 위반 물건 42. 저작권 침해 물품
種 보전	43. 야생 동물
기 타	44. 성냥·불꽃·칼, 45. 외국자산 관리국 (OFAC) 지정 품목, 46. 미풍양속에 반하는 물품, 47. 석유·석유 제품, 48. 강제 노동에 의한 제품, 49. 부정 경쟁에 의한 제품, 50. 공예품 / 문화재

- 쿼타 품목

- 수입 수량 제한 품목(Import Quota / Absolute Quota) : 섬유 제품에 한 해당되며, 국가별 할당 수량은 세관 국경 보호국(CBP : US Bureau of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의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

- 관세 할당 품목(Tariff Quota) : 에틸 알콜, 우유 크림, 올리브, 귤 (Mandarins), 참치, Upland Cotton, 모직, 일부 면셔츠 소재 일부(09년 8월말 현재)

- 기타 허가 품목

- 주류 수입사업을 시작하려면 수입으로 기본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음
- 자동차의 수입에 있어서는 형식에 따른 연방 자동차안전기준 (FMVSS), 배기가스 기준을 충족해야 함
- 보트 수입에 대해서는 미국 해안경비대(USCG)가 정하는 안전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 수입 규제를 관할하는 기관

법무부 ATF	Bureau of Alcohol, Tobacco, and Firearms http://www.atf.gov/ Washington, DC 20226 (202) 927-8110 (주류)
---------	--

	(202) 927-7920 (무기류)
농무부 APHIS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http://www.aphis.usda.gov/index.html Hyattsville, MD 20782 (301) 734-7885
농무부 AMS	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 http://www.ams.usda.gov 14th & Independence Ave. SW Room 2525 - South, Washington, DC 20250 (202) 720-2491
내무부 USFWS	US Fish and Wildlife Service http://www.fws.gov 4401 N. Fairfax Drive Arlington, VA 22203 (703) 358-2093
보건복지부 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http://www.fda.gov 5600 Fishers Lane Rockville, MD 20857 (301) 443-6553

○ 수입 지역 제한

- 외국자산 관리규정, 쿠바자산 관리규정 등에 따라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수출입 금지가 내려진 나라는 다음과 같으며, 이 나라를 원산지로서 하는 원자재는 제 3국을 통한 것이라고 해도 수입이 금지됨)
- 제재국 : 쿠바, 이란, 시리아, 북한, 수단, 버마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은 지금까지 수입지역 규제대상이었지만, 2002년 1월, 중국의 탈레반 지배는 소멸했다고 국무부에 통보하여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리비아는 2004년 9월 경제제재 조치 해제를 받았으며, 무역제한 조치도 해제되었음

○ 수입과 관련한 각종 수입제한 법령

반덤핑(19USC1673)	http://www4.law.cornell.edu/uscode/19/1673.html
상계 관세(19USC1671)	http://www4.law.cornell.edu/uscode/19/1671.html
세이프 가드 규정 (19USC2251)	http://www4.law.cornell.edu/uscode/19/2251.html
외국정부 등의 부정무역 관행(통상법 301 조) (19USC2411)	http://www4.law.cornell.edu/uscode/19/2411.html
불공정 무역 관행 (19USC1337)	http://www4.law.cornell.edu/uscode/19/1337.html
수입 과징금(국제 수지 제한) (19USC2132)	http://www4.law.cornell.edu/uscode/19/2132.html
바이 아메리칸 법 (41USC10a)	http://www4.law.cornell.edu/uscode/41/10a.html
국제 안보 개발 협력 (22USC2349aa - 9)	http://www4.law.cornell.edu/uscode/22/2349aa-9.htm
슈퍼 301 조(19USC2411)	http://www4.law.cornell.edu/uscode/19/2411.html
스페셜 301 조 (19USC2242)	http://www4.law.cornell.edu/uscode/19/2242.html
농작물 및 섬유 제품 수입 제한 협정 (7USC1854)	http://www4.law.cornell.edu/uscode/7/1854.html
농산물에 대한 부과금 및 할당 (7USC624)	http://www4.law.cornell.edu/uscode/7/624.html
육류 수입 쿼터 (19USC2253)	http://www4.law.cornell.edu/uscode/19/2253.html
철강 수입 제한 (19USC2253)	http://www4.law.cornell.edu/uscode/19/2253.html

3. 미국 수출 유의사항

□ 강화되는 수입식품 안전기준 인지

- 수입식품으로 각종 질병이 많아져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3년 7월 26일 강화된 법안이 발표돼 현재 여론 수렴단계에 있음.
- 해외 공급업체 입증(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수입업체 책임 하에 해외 생산기지가 식품안전기준에 따라 식품을 생산했음이 증명돼야 함.
- 제3자 검사 및 증명(Accredited Third Party Audits and Certification): 식품생산 소재 국가의 검사기관이 위생 검역 증명서 발급해 FDA에 보고해야 함.
- 링크: www.fda.gov/Food/GuidanceRegulation/FSMA/default.htm

□ 가공식품은 미국 식약청(FDA), 농축수산물은 미국 농무부(USDA)가 담당

- 2001년 9.11 테러 이후 본격적으로 수입식품 규제를 강화한 미국은 2003년 12월 12일 생물학테러법(Bioterrorism Act) 발효로 미국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의 역할 강화
- FDA는 미국 농무부(USDA)에서 관리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을 제외한 모든 가공식품을 관리하며,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생산 기지(제조, 가공, 포장, 저장 등)를 FDA에 등록해야 함.
- 링크: www.fda.gov/Food/GuidanceRegulation/FoodFacilityRegistration/default.htm
- 미국 농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산하의 동식물검역소(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APHIS)에서 농축수산물 규제
- 미국 측 수입업자들은 농수산물 수입 허가증을 APHIS에서 받아야 함.

- 국가에 따라 수입 금지품목이 정해져 있어 사전에 APHIS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해야 함.

□ 식품 도착 전에 FDA에 선적 통보 필수

- 해외 제조업체가 가공 식품을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 물건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에 반드시 FDA에 선적일 신고를 해야 함.
- 신고 기준은 운송 수단에 따라 다른데 육상의 경우 2시간 전, 항공은 4시간 전, 해상은 8시간 전에 신고를 해야 하며 국제우편으로 보낼 경우에는 보내기 전에 통보 필요
- 링크: www.fda.gov/downloads/Food/GuidanceRegulation/UCM140285.pdf

□ 과거 해당 식품 수입을 거절한 제3국가 기재 의무

- 2013년 5월 30일부터는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이 다른 나라에서 과거 수입이 거절됐을 경우가 있을 시 이러한 내역(국가 리스트)을 사전 통보 시 반드시 명기해야 함.
- 링크: www.gpo.gov/fdsys/pkg/FR-2013-05-30/pdf/2013-12833.pdf

□ 한국 축산물 가공품은 육류 종류에 따라 다른 허용 기준 적용

- 축산물을 가공한 식품류를 미국에 수출할 경우 그 포함 비율에 따라 USDA가 아닌 FDA에 생산 기지 등록 후 수출 가능
- 한 예로 육류를 일부 포함한 가공식품의 경우 품목에 따라 허용량이 다르므로 제품 수출 시 미국 USDA 및 수입 기업과 확인 필요
- 링크: www.ers.usda.gov/topics/animal-products/cattle-beef/trade.aspx#.UjyOvsZLP_4

□ 술과 담배는 TTB에서 별도로 관리

- 술과 담배는 미국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 산하의 주류연초세 무무역국(Alcohol and Tobacco Tax and Trade Bureau, TTB)에서 관리
- 주류 수입 및 판매를 위해서는 TTB에 수입자 및 라벨링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별도 라벨링 규정에 맞춰 라벨을 제조해야 함.
- 링크: www.ttb.gov/importers/importing-exporting.shtml

□ 건강보조식품은 일반 식품과 다른 라벨링 필요

- 의약품이 아닌 건강보조식품은 FDA의 사전승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나, 한국과 달리 제품 광고에서 치료효과가 있다는 식의 문구가 표기돼 있을 경우 의약품으로도 취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함.
- 제조품질관리기준(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CGMPs)을 준수해야 하며, 영양 성분(Supplement Facts)을 표시한 라벨링을 규정에 맞춰 해야 함.
- 링크: www.fda.gov/food/dietarysupplements

□ 동물이 섭취하는 식품도 FDA에서 관리

- FDA는 사람이 먹는 식품 뿐 아니라 애완동물 및 가축 사료와 같이 동물이 섭취하는 식품도 관리 대상이므로 생산기지 등록을 해야 함.
- 링크: www.fda.gov/AnimalVeterinary/Products/AnimalFoodFeeds/PetFood/default.htm